

제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1.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월 27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위 원 장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1년도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같음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430호 『삼성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1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용한도를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용업종을 교통·문구·서적·편의점·학원으로 제한한 가족 신용카드를 부모의 신청으로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발급하는 혁신서비스를 지정하는 내용

-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상정되었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 말씀이 있으셔서 보류되었던 건인데 이후 보완한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카드사와 협의를 해서 미성년자들이 사용하는 카드라는 것을 부각할 수 있도록 카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금융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협의해서 추가함.
- (위원) 아직도 당초에 지적했던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고 봄.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지만 증여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부대조건을 보면 '월 이용한도는 10만원, 건당 결제한도는 5만원'이라는 것을 추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강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행해 가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보완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음.
- (위원) 부가조건을 보면 집행 가능 하느냐는 점이 걱정되는데, 금액은 그렇게 하고 부모한테 통지하는 것도 부가조건으로 잘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통지가 중요할 것 같음. 결제할 때마다 부모가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조금 귀찮겠지만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서 중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 중간점검을 하면 카드사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림.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2호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저축은행법을 위
반한 이에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및 과징금
91.1억 원 등을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이에스저축은행 대표이사 ◇◇◇임. 당 저축은행은
금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조치원인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
원 및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겠음.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치를 결정하시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 첫 번째, 당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출을 전부 해소
하였음. 당 저축은행은 작년 7월말 경영권 변경 이후 금융
감독원의 감독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과 관련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한도초과액을 부실 없이
전액 회수하고 위반사항 시정을 완료하였음. 두 번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조치시 사실상 당 저축은행은 1년간 유가증
권담보대출 신규취급이 중단된다는 점임. 당 저축은행은 경
영권 변경 이후 현재까지 유가증권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중
단하고 오로지 회수에만 집중하여 왔음. 이런 상황에서 6개
월간 유가증권담보대출 신규취급이 추가로 정지된다면 사실
상 1년간 신규영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됨. 새롭게 탈바꿈하
여 도약하고자 하는 당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영업기반
의 와해는 물론이고 여신 포트폴리오 운용이나 영업구역 내

여신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건전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세 번째 종전 저축은행 제재 사례에 비추어 전례 없이 과중하다는 점임. 과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을 범했던 ○○○○ 저축은행의 경우 당 저축은행 대비 한도초과 금액이나 자기 자본대비 초과비율이 50% 가까이 많았음에도 당 저축은행 행정처분상 두 단계 아래 수준인 '기관경고'에 불과하였던 사례가 있음. 네 번째 제재조치에 따른 대량 예금인출 사태와 같은 업계 전반에 미치는 과도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당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의 고객들까지 불필요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로 인한 동요로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2011년경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뉴스보도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났던 사례도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사기 매각에 따른 피해자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여신 회수 그리고 이미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감당하는 등 당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임. 금번 제재의 원인은 모두 종전 실질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발생한 것임. 이로 인해 당 저축은행은 과징금부담 등으로 BIS비율이 크게 하락해서 2020년 9월말 약 15% 수준에서 2020년 12월말 9.2%대로 자본건전성 악화가 발생했고 이미 6개월 이상 유가증권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중단해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 기간이 부과될 경우에 이후 여신 영업기반 재구축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현재 실질대주주는 건전경영을 위한 최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각오로 100억 원 이상의 증자를 계획하

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종전 실질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도 착수한 바가 있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6개월의 일부영업정지와 92억 원의 과징금 부담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당 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너무나도 과중한 부담임. 이에 영업일부정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시거나 금감원의 최초 조치안이었던 3개월 수준으로라도 고려해 주신다면 현재 새로운 실질대주주와 경영진은 과거 부정을 일소하고 건전 경영의 기반을 마련해서 중소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 변호사임. 의견서에서 말씀드렸듯이 ㉣㉤㉥ 前대표이사는 혐의사실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입장임.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약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감독관이 舊라이브저축은행에 상주하면서 문제된다고 하시는 관련 대출의 현황을 매일 보고 받음. 그리고 분기별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前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서 해당 대출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필요한 서명을 모두 다 한 사실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갑작스럽게 엄청난 규모의 대출들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정말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임.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결국 CB나 BW와 같은 유가증권담보대출 부분임. CB 내지 BW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건에서 발행회사는 일종의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함.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그리고 실제 차주 그리고 은행의 담당자가 사전에 대출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임. 모든 유가증권 인수자금에 대한 담보대출 건에서 어느 은행이라고 하여 예외 없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임. 사실 금감원에서 어떠한 경위로 이 부분이 실차주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제재심에서 보면 애당초 대출심사과정에서 발행회사도 함께 참석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만으로 발행회사를 실차주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함. 세 번째로, 금융감독원이 실질차주라고 보고 있는 CB 내지 BW의 발행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었는지 의문임. ◆◆◆은 CB 내지 BW의 발행회사가 아니라 제3의 개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별도 다른 사건으로 형사절차 진행 중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혐의사실에 대해 실차주라고 지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서 이를 실차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도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음. 네 번째로 지금 의견제출을 하고 있는 ○○○前대표이사 또한 은행에서 당시 실행되었던 각종 여신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몇 차례 받은 것에 불과하고 현재 경영진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중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前대주주인 ○

○○○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그리고 제재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 또한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에스저축은행의 現경영진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전반적인 혐의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책임을 前경영진에게 전가하고 있음. 금감원 또한 前경영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매우 급박한 일정으로 제재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음. 아마도 이에스저축은행의 現경영진은 금융감독원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등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혐의사실, 특히 실차주 한도 위반 부분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실차주 한도 위반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도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이에스저축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의 대출심사 절차상 누가 실차주인지 사실 파악할 수 없음. 舊라이브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명의차주라고 분류하고 있는 차주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조건들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대출을 거절할 수도 없음. 그러한 권한범위를 넘어서 저축은행이 누가 실차주인지 들여다보겠다고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한다거나 각종 정보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제적으로 확인 내지 추적을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밖에 평가되지 않음. 형사 절차에서 실차주 한도 위반에 해당하려면 발행회사와 명의상차주가 특수관계인의 관련성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도 위반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본건들에 있어서 과연 CB나 BW의 발행회사와 인수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 사이에 그런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소명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은행에서 확인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지금 前대표이사인 ●●●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한 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어찌된 연유로 이것을 실차주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음.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 공여 부분과 관련해서 舊라이브저축은행이 거절한 리스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절한 일부 대출이 ○○○○○○○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음. 아마도 舊라이브저축은행 측에서 ○○○○○○○에게 대출위험성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출건이 있다는 안내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출 관련된 양식 같은 것도 제공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내부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신청이 들어온 대출 전부 실행하기에는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거절하였고 ○○○○○○○에서는 그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출을 별도로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거절하거나 소개한 것은 아님. 이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사실 담보물인 ◆◆◆◆◆라는 주식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거절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그 주식이 급락함으로써 인해서 반대매매가 나갔던 대출 건이었음. 이렇게 위험이 있는 건이라면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위험성 있는 대출 건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사정 또한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살펴봐 주실 것을 양망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舊라이브저축은행 건은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통해 적발을 했었는데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던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함.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점들이 있었던 것 같음. 첫 번째는 본건 위반 사례가 발생할 당시에 실질적 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舊라이브저축은행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라이브저축은행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주식을 인수해서 저축은행에 지배권을 행사했었음. 이렇게 저축은행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대주주 주식을 인수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음. 이처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저축은행 우회인수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로 궁금함. 두 번째는 동 위반 건은 사실상 실질적인 대주주인 ○○○에 의해서 주도됐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지금 제재조치를 보면 ○○○에 대한 제재조치는 보이지가 않고 후임자들에 대해서 제재들이 나가고 있음. 아까 진술인이 실질적으로 위반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고 후임자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 약간 공감은 감. 제도상으로 실질적으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조치는 계획이 없는지 궁금함.

- (보고자)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주주 변경승인과 관련된 제도와 연결되어 있음. 지금 현재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은 저축은행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대주주인 (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케이스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격성 심사와 수시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음. 저축은행법은 현재 정기적격성 심사만을 운영하고 있음. 수시적격성 심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격성 심사의 기간 중간에 들어와서 그 기간 동안에 위법행위를 하고 나간 케이스라고 보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법의 수시적격성 제도와 유사한 것을 상호저축은행법에 추가하려고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음.
-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금감원에서 답변하시겠는지?
- (보고자) 현행 저축은행법상에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원칙임. 필요하다면 대주주도 검사를 할 수 있음. ○○○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직원들이 관련자 진술에 의해 이미 다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임. 또 현재 저축은행법상에 대주주에 대한 처벌은 사실 조항이 없었음. 그래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과 행사에 대해서는 제재심의회가 끝난 2020년 12월20일에 검사를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검찰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판단됨.

-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인지?
- (보고자) 죄목은 10년 이하 징역 내지 5억 원 이하의 벌금임.
- (위원) 그러니까 저축은행법인지? 무슨 법인지?
- (보고자) 아마 개별 차주는 보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 행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으며, 저축은행법 제39조 벌칙에 있음.
- (위원) 이에스저축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임. 그 중에 하나가 종전 실질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해서 한 것이고 본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재심의에서 본래 영업일부정지 3월이었다가 제재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정 제재의 필요성 때문에 6개월로 늘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음. 이 이유를 보면 現경영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당시 前실질대주주와 前대표이사의 문제점들 때문에, 물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고 충분히 가중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3월에서 6월로 수정의결한 것도 이해는 되지만 반대로 現경영진 입장에 있어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 입장은 現경영진이고 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現경영진의 그러한 사정을 봐서 본래 원안이었던 3월 정도도 적정하지 아니한지 그것이 궁금함.

- (위원) 처음에 내용을 접했을 때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느냐고 화가 났는데 진술인이 이야기 한 것을 들어보니까 진술인도 할 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왜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진술인의 주장대로 다시 3개월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여기에는 배경설명이 필요함. 당초 대주주 ○○○은 경주에 있는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었음. 그런데 나중에 증선위에서 시세조종혐의로 고발이 되고 사실상 저축은행 인수가 좌절되었음. 그 이후에 舊라이브저축은행의 종전 명칭이 삼보저축은행이었음. 영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삼보저축은행의 모회사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확보한 후에 이런 영업행태를 해왔었는데 그 당시 감독관도 파견하고 약서를 징구하고 정도 경영을 해 달라, 특히 ○○○이 사실상 상상인저축은행의 ◆◆◆ 쪽에 가깝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정도경영 해달라고 당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부분임.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에스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모회사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했던 것임. 사실상 現경영진이 억울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그 당시 인수할 때 제대로 된 실사를 통해서 그것의 적정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이 주식을 취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고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2017년도 금융위원회 안전에서는 향후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기준이었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물론 現경영

진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문제는 과징금이나 모든 요인들을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인수할 필요도 없었고 ○○○ 입장에서 대주주 정기적격성 심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정기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나오면 저축은행을 제 값에 팔지 못함. 10%이상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안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고 또 現경영진이 이 업무를 현재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주주 및 경영진을 불러서 “저축은행법에 맞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주십시오. ○○○ 계열과 같은 CB, BW 담보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고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들이 리스크가 상당히 있음. 현재 ○○○ 계열 같은 경우는 CB, BW는 연체율이 20% 이상 넘어간 상태임. 본인들이 스스로의 그런 것보다는 감독당국의 지도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설령 이 부분이 6개월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사실상 전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규제 측면에서 엄격히 엄단해야겠다는 것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이었음.

- (위원) 제재심 의견 때문에 바꾼 것이라는 뜻인지? 처음에 금감원 담당부서에서는 3개월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 (보고자) 통상적으로 과거 금융기관들의 영업정지를 보면 법에서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이 일반적임. 과거에 카드사 정

보유출이나 영업정지에서 신규 해당위기 행위를 촉발한 업무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한 사례가 많이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도 있었음.

- (위원) 두 번째 진술인이 말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금감원에서 관리인이 나와서 다 협의했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 (보고자) 대주주와 다 불러서 감독관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경영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염려되었기 때문임. 그런데 감독관은 주요업무가 금융사고 예방측면이지, 대출 건별로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않느냐를 심사하는 것은 아님. 그래서 그 당시 금감원 1명, 예보에서 1명해서 2명이 계속적으로 경영권이 이전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그 업무를 했던 것이고 특이한 사항은 감독관도 우려가 되어서 유가증권담보대출 업무가 위험하다, 그래서 22차례나 경고를 했음. 22차례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답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의 지시 하에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임.
- (위원) 금감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3개월의 근거였는데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재심에서 6개월로 상향조정 됐던 되었던 것이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 궁금함. 두 번째는 이것이 예보와 같이 공동검사를 나간 것인데 검사와 제재심의위를 거쳐서 최근에 상정되는 것들을 보면 2019년, 2018년 건임.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는 말임. 그래서 前경영진이 얘기한 것이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빨리 서두르다보니까 적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술인 쪽에서 제기하는 적법절차상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함.

- (보고자) 일부영업정지 3개월로 판단했던 것은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3개월로 결정했었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점이 됐던 부분은 그렇다면 저축은행 인수할 때는 제대로 된 실사를 통해서, 그 당시 나왔던 얘기는 現경영진의 과거 근무경력을 위원님들이 여쭙봤음. 대부분 은행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높은 그런 분야에서 근무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수했던 부분이 새로운 경영진의 귀책사항에 절대로 기인한다는 부분이고, 이런 위규행위가 조직적으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부 통제 위반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최소한 그 부분을 엄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제재심의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조정이 되었음. 그리고 아까 얘기나온 절차적인 문제는 ●●● 前대표이사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대표이사면 본인이 얼마든지 그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고 통보를 안 받았다는데 나중에 대표이사 끝나고 제재통보를 할 때 새로운 경영진이 해당 당사자한테 반드시 통보를 하라고 해서 다 이미 본인한테 기회를 줬던 부분임.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름. 관련 직원들 진술 문답에 의하면 ●●● 본인도 직접 차주와 상담하고 결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진술인이 주장한 것처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위원)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임. 前경영진의 문제로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3개월로 했는데 제재심에서 6개월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음.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검찰고발 한다고 할 때 그 앞단에서 6개월 했을 때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말했는데 저축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기 바람.
- (보고자) 과징금 91억 원과 영업정지부분임. 현재 유가증권 담보대출 부분은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BIS 비율이 약 0.8%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임. 과징금 91억 원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2.4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임. 의견진술인이 얘기했던 9%대는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15%대였음.
- (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계획부분임.
- (보고자) 혹시나 모를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해서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고 준비한 비상계획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예정임. 그래서 고객들이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 (위원) 처벌하되 그 대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는 문제니까 잘 대처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호 『(경기)폐폐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폐폐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 한 것으로 지적받은 건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런 건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이니까 계속 처벌하는 것은 맞는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경고를 해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준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어디 은행인지? 물론 저축은행 개수가 많다 보니까 위험한 곳도 있고 건실한 곳도 있겠지만 이것은 금감원이 도둑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도둑은 잡되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준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금감원과 함께 자주 위반하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음.

○ (위원) 예방조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호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화재보험 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호 『교보생명보험(주)의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주)에 대한 업무추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교보생명보험(주)의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주)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업무추가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호 『교보생명보험(주)의 자회사인 교보증권(주)에 대한 업무추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교보생명보험(주)의 자회사인 교보증권(주)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업무추가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6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 등 자본의 대외유출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 (위원) 안전공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음. 어차피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쏠은행한테 적용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증자라든가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낙인효과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대외 발표하는 자료에는 은행명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본 안건에는 은행명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낙인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익명처

리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금융위 은행과장임. 지금 보고드린 안건은 요약본으로 공개본이 아님. 공개되는 안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는 은행이라든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권고내용만 들어가 있음.
- (위원) 대외 공개되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건 자체도 공개대상임. 그런데 안건 자체에는 개별 기업들의 명칭들이 다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명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위원) 권고안이 6월까지니까 안건공개를 비공개로 하거나 1년 뒤에나 6월 이후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은행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안건이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님. 공개시기는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도 하겠음.
-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금감원과도 상의하시기 바람.
- (위원) 권고안의 적용대상기관으로 산은, 수은, 기은은 제외되어 있는데 산은과 수은은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권고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 기업은행도 일반주주가 50% 되고 정부가 한 50% 되는데 거기도 아마 차등하는 것 같음. 정부 배당과 일반으로 배당을 하는데 배당정책을 금융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국고국에서 결정하기 때문임. 그래서 국고국은 한 40%를 가져감. 20%를 권고한다고 한들 국고국에서 40%를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20% 내외에서 하면 국고국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이기 때문임.
- (위원) 권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 (위원) 그러함. 그래서 그것은 국고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음. 수출입은행도 배당을 하면 안 되는 은행인데 아마 국고국에서 40% 가져갈 것임.
- (위원) 산은과 수은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기은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이 들어와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으로 시나리오 작성했고 마치 스트레스테스트를 같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시나리오는 같이 만들었지만 스트레스테스트는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된 것이 맞는지? 원래 스트레스테스트를 양 기관이 매년 동시에 하는데 이번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다른 곳에서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음.
- (위원) 우리가 이 문서 공개를 바로 하든 6월에 하든 이 문

서가 공개되었을 때 시나리오에 U자형, L자형이 나왔는데 U자형과 L자형의 전제가 금년도 -5.6% 역성장인데 우리가 작년엔 1% 역성장하고 그 여파로 금년에 3.1% 성장한다고 IMF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이 가정이 정부 가정이나 IMF 이런 곳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 가정이 지나치게 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가정을 빼 버리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가정까지 설명할 것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가정이 발표되면 “배당 못하게 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실제 전망치를 가지고 하지 않음. 어제 IMF에서도 세계경기 전망을 업데이트한 것을 발표할 때 Up Side Risk와 Down Side Risk를 발표함.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실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Down Side Risk 하에서 IMF의 세계경기 전망들은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낮음. 그런 차원에서 실제 전망치는 이렇게 좋은데 왜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이렇게 더 안 좋은가, 원래 스트레스테스트의 취지 자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예측치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측면임. 한국은행과 같이 했다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 그렇게 보이는 표현은 수정하도록 하겠음. 다만,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거시경제에 한국은행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임. 그리고 낙인효과 부분에서 공개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임. 그래서 보도자료에는 결과를 표시하지 않았고 실제 권고안에도 약간 차등화된 권고안이지만 각 은행들에게도 실제 L자형 시나리오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외에 노출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려고 함.

- (위원) 알겠음. 경우에 따라서는 U자형은 모두 통과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대외 신인도에서 나쁘지 않음.
- (위원) 보도자료가 먼저 나온 거 같은데 맞는지?
- (보고자) 보도자료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 초안을 올려드렸던 것이고 보도자료 배포는 내일 될 것임.
- (위원) 기사가 벌써 나와서 기사 내용에는 차라리 명확하게 금융위에서 결정해 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임.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을 제시해 준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융위에서 의결했는데 오늘까지의 반응은 금융위가 명확하게 해 주어서 좋다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림. 금감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호 『(주)우리은행 등 4개사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우리은행 등 4개사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계열 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기관 및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호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확인된 '주가연계증권 신택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구속행위 금지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주)케이비금융지주를 대리해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에 관한 제재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게 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 변호사임. (주)케이비금융지주에게 이 사안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서 저희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제재 원인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은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의 보수 전체 중 장기보수에 한해서 30% 부분에 대해 상대적 총주주수익률(이하 Relative TSR)을 보수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통지가 이루어졌음. 의견진술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첫 번째로 위원회에서 2019년에 유권해석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보수와 연동이 금지되는 재무적 성과지표는 전체적인 재무적 성과지표 일반이 아니라 직접적 수익성 지표에 한정됨. 그러나 당사에서 사용한 Relative TSR은 ROA, ROE, 배당가능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과 같은 직접적 수익지표가 아니라 당 금융그룹의 전사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주주가치지표이고 이러한 주주가치지표에는 보수의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반영되고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수에 반영한 것이고 직접적 수익성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또한, 위원회에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당사가 사용한 Relative TSR이 아니라 일반적인 TSR에 대해서는 배당이 반영된다는 이유로 직접적 수익성 지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나 당사가 사용한 Relative TSR은 당사의 경쟁이사와의 TSR과의 상대지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지주사 배당성향과 배당률이 매우 유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배당으로 인한 효과는 상쇄되어 없어지게 되어 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Relative TSR 경우에는 TSR과 달리 직접적 수익성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직접 보수와 연동이 금지되는 재무적 성과지표의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당사가 기존에 외국사례나 문헌들, 내부적 법률검토를 통해서 Relative TSR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고, 그동안 검사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았음. 그리고 2019년에 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직후에 불필요한 논란이나 감독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즉각 유권해석에 따라서 Relative TSR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하였음.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성 오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고 선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재무적 경영성과는 직접적 수익성 지표로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당사가 사용한 Relative TSR의 기본개념이 되는 TSR에 의하면 계약종료시 주가, 계약시점의 주가가 주된 반영요소이고 그 기간 내에 배당락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주당배당금이 조정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SR의 중심이 되는 주가는 2020년 6월에 별도의 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재무적 경영성과 연동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함. 당사가 사용한 Relative TSR은 TSR과 달리 경쟁회사 TSR과 당사 TSR의 상대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요 금융사 배당수익률과 배당률이 상당히 유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배당수익효과가 상쇄되게 됨. 따라서 2019년 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배당에 영향이 없는 Relative TSR은 재무적 성과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실제로 시정을 해서 배당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영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사례와 국내 법률검토를 거쳐서 위법하지 않다는 확신 하

에 Relative TSR 사용한 것이고 귀위원회 유권해석 이후에 바로 시정하였음. 다른 회사 사례와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위법성의 문제가 상당히 낮아 직접적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지난번 안전검토소위원회 때 논의를 했던 사안이고 그때 논의되었던 사안들은 이 위반사건이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 위반되었던 사례이고 그 이후에 시정된 사례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음. 또 하나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과연 상대적 총주주수익률(Relative TSR)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산식을 보면 분자항에 배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형태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비록 2019년에 유권해석이 나오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산식 자체에 들어가 있는 배당을 재무성과와 연동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추가논의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그래서 금융정책과장이 논의결과나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고자) 지난 금융위 안전검토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금감원과 함께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음. 세가지의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19년 7월에 금융위에서 나갔던 유권해석의 적정성 여부임. 실제로 의견진술인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배당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준

법감시인의 성과에 연동되었을 경우 이것이 2016년 8월에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법취지에 위반된다는 부분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타 두 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음. 그 법률자문 결과도 일단 배당수익률이 들어가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음. 그리고 아까 의견진술인이 얘기한 부분에서 Relative TSR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지주사들의 배당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히려 배당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진술인 쪽에서 얘기한 부분이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 같지 않음.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배당수익률을 여기에서 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여전함. 두 번째 문제는 지배구조법을 2016년에 시행했는데 그 뒤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감사인에 대한 재무적 경영성과의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guideline)이 없어서 법해석상에 혼선이 있었겠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음. 세 번째는 작년 4월에 ★★지주에 대해서 유사 안전으로 제재조치가 있었던 바 있었음. 그런데 당시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케이비금융지주와는 달리 ROA, ROE, 이런 기초적인 재무적 경영성과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제재를 할 수 있었음. 그런데 ★★지주에 비해 (주)케이비금융지주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측면임. 그런데 문제는 ★★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할 때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고의성 이런 부분을 모두 경감해서 가장 약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런 상대적인 측면을 고려해 준다면 (주)케이비금융지주를 더 감경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임. 그래서 만약 그런 상대적인 부분을 고려

한다면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 3에 의한 과태료 부과 면제 조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아예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이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진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함. 일단, 이 건이 (주)케이비금융지주 건이 있고 (주)케이비국민카드와 (주)국민은행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국민은행과 (주)케이비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지주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썼다는 측면을 십분 고려해서 검사 및 제재규정상 과태료 면제 사유를 적용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케이비금융지주의 경우에는 2016년 당초에 도입된 지배구조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에 좀 더 가중치를 두어 (주)케이비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들의 의견임.

- (위원) 금감원도 같은 생각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얼핏 보니까 TSR이 성과지표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음. 그다음에 Relative TSR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면 빠져나가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 우리가 감사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 성과지표와 연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전반과 무관하게 일을 처리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런 지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음. 사실 여기 Relative TSR 지표를 보면 어떤 회사의 경쟁력이 늘어나면 이 지표가 올라가고 보상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쟁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성과하고 플러스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이것도 성과와의 관계가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이것도 당초 규정의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

- (위원) 굉장히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논의된 내용이나 유권해석에 대해서 사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 왜냐하면 지금 이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를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분들의 보수를 금융회사의 수익과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임. 그것에 연동되어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뜻임. 그런데 직접적인 재무 성과와 배당이라는 것은 상관관계는 있음. 그러니까 재무성과가 배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있을지언정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재무성과 자체가 배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함. 왜냐하면 배당은 독립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준법감시인이라든가, 위험관리책임자라든가 이 사람들의 보수를 결정할 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서 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배당정책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 나간 유권해석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실은 유효함. 그런데 지금 실무(안)에 마련해 놓은 것은 이를테면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법 시행하고 난 다음에 2019년 한참 뒤에 나왔고 위반사실은 그 이전에 벌

어졌던 것이고 모호했던 사항이 있으나 2019년의 유권해석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지주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하고 은행과 카드의 경우에는 지주를 따라 했으니까 면제하자는 취지임. 유권해석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실무(안)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신 것 같아 보임.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고 싶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음.

- (위원) 배당정책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아까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측면과 그런 것을 어떻게 부가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음. 그런데 진술인이 설명 중에 해외사례와 바젤위원회를 언급하던데 해외 여러 유수은행들이 이것을 다 준법감시인들한테 적용한다는 것과 바젤위원회에서도 표현이 애매하지만 괜찮다는 해석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규나 유권해석이 이런 곳의 관행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해외사례 조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CITI나 SC를 통해서 본사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음.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런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회답을 받았음. 그래서 (주)케이비금융지주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음. 그리고 바젤위원회도 내용을 판단해 보면 준법감시인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최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한테 적용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음. 그래서 바젤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주)케이비금융

지주에서 약간 오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은 제재심에서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재심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없었음.

- (위원) 원안은 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제재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유권해석부터 의문이 든다는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유권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은행과 카드는 지주를 그대로 따라 했으니까 지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행, 카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안)인데 우리가 결정할 것은 원안대로 세 곳을 다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실무(안)대로 지주만 하고 두 곳은 빠질 것이냐, 다 무효화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하지 않느냐 세 가지인 것 같음.
- (위원) 사실 배당은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임. 정확하게 실질을 따져서 본다면 직접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움. 사실은 어려운데 유권해석이 나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임. 유권해석이 나가서 이번에 제재대상이 되는 곳도 다 바꾸었음. 허용해 주었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이 유권해석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뜻임.
- (위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배당이 수익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임. 이것을 수익성과 무관하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듬.

- (위원) 일단 유권해석도 나갔고 그 부분도 유효하다면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이니까 세 곳 다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두 곳은 지주 것을 그대로 따라했으니까 지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곳은 과태료를 면제해 주자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임.
- (위원) 지주는 잘못했다고 하고 똑같은 것을 사용한 카드와 은행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지?
- (위원) 규정을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이라고 해서 그냥 과태료 면제가 아니라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그냥 면제는 안 되고 '견책',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임.
- (보고자) 제재심에서 개인 제재는 이미 완료가 되었음.
-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관 제재가 아닌지?
- (보고자) 이것은 과태료 건만 금융위 결정사항이고 개인제재는 제재심을 통해 이미 기초치 된 사항임.
- (위원) 과태료를 면제해 주려면 '견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임. 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래서 '견책'은

주로 개인인데 기관에서는 '주의'나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음.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것보다는 '주의'정도가 어떨까 생각함. 왜냐하면 '시정조치'는 달라서 나중에 잘못되면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것은 문제된 것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해석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 가장 최소한의 것을 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음. 이 조항 자체가 개인에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음.

-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 (보고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음.
-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가 과태료보다 더 강한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이 조항은 '견책', '주의'는 개인조치분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석·운용해왔다고 함. '견책'이라는 것은 원래 말 자체가 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는 용어임. 개인으로만 판단을 해왔음.
- (위원) 세 곳 다 과태료 부과하자는 의견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들이 지주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행, 카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기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규

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하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가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환기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가 나와서 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이 건은 개인주의인 경우임.
- (위원) 아니, 기관주의를 묻는 것임.
- (보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온 주의는 개인주의에 한정되는 것임.
- (위원) 우리가 의결을 할 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과장을 주는 것인지?
-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가벼운 제재가 무엇인지?
- (보고자) 제재규정 상에 기관주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회의적이고 실무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다른 것은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떠한지?
-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음. 그런데 한 가지 여쭙볼 것이 있는데 앞으로 똑같은 관행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른 금융회사나 이런 데에서 동일한 방식의 지

표를 사용해서 감사나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음.

- (보고자)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내부통제에 대해서 법규를 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음.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의지를 가지고 입법부의 취지를 살려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권해석이 나왔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업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배당수익률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음.

- (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은 너무 급하니까 해 주는데 앞으로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그것을 규정을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특히 제재나 처벌이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하지는 않고 실무진에서 했을 거임. 이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금융위에서 논의단계에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논의가 되어서 합의구축이 될 것 같음. 우선원칙은 일단 이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앞으로 다른 기관도 위배하면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은행과 카드만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하나의 선결정이어도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지침이나 유권해석 같은 부분 중에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것 내

보냈느냐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또 아까 말한 수용성 측면에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공문 하나 보내고 처벌하느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음.

-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면 Relative TSR이라는 지표를 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 (위원) 그러함.
- (위원) 알겠음.
- (위원) 일단은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0호 『(주)케이비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케이비금융지주가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성과평가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호 『(주)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케이비국민카드가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성과평가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은 금융위원회 과장님이 기록을 위해 처음에 (주)국민은행 했을 때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음.

○ (보고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음. 지난 1월8일 금융위 안건 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적이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의 법률과 관련하여 배당수익률을 감사인 성과지표에 넣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선 지주회사의 지표를 그대로 사용한 (주)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 드림. 그와 상응해서 (주)케이비금융지주에 대한 과태료는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금 전에 의결해 주셨음.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실 것을 금융위에 다시 건의 드리겠음.

○ (위원) 금감원도 같은 생각이신지?

○ (보고자) 같은 의견임.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42호 『(주)국민은행 등 28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국민은행 등 28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 (위원) 이번에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산업 본허가를 받아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산업화 되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작년 10월에 6개사가 대주주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6개사의 예비인가심사가 보류된 바가 있음. 그런데 마이데이터 같은 혁신사업은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음. 그리고 진행 중인 제재절차나 어떤 수사나 이런 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장기간 심사를 중단하게 되면 심사가 중단된 6개사는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 장기간 심사를 중단하는 이런 제도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 이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함.

○ (보고자) 이번에 신청 받은 곳이 총 38곳임. 38곳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허가규제의 규제공백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음. 현재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면 심사보류 됐던 6개 회사들도 조만간 예비허가를 신

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음.

- (위원) 아까 ▲▲▲▲▲▲▲▲▲▲은 ▽▽▽▽▽▽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많고 언론에 이미 보도도 되었음. 유예한 것 아니냐, 꿈수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부가조건을 넣은 것이고 필요할 때 부가조건을 넣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람. 그리고 ▲▲▲▲▲▲▲▲▲▲과 ▽▽▽▽▽▽에 원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내지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확인서도 받았고 필요하면 주총의사록이라든지 이 사회의사록도 서면을 통해 확인할 예정임.
- (위원) 감독당국을 무시하고 탈법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금융위 과장님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침(guideline)을 2월 중에 만든다고 되어있음. 아까도 말했지만 급하니까 빨리 지침, 유권해석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약 지침의 내용이 나중에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이 되는 내용이 되면 지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다시 규정화시켜서 명확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따르지, 지침 하나 보내놓고 어겼으니까 처벌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처벌을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지침 내용에서 법규성이 더 필요한 내용들은 향후에 감독규정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음.

○ (위원) 급하니까 우선 지침을 준 것은 좋은데 계속 지침으로 남아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음. 명확하게 해서 법규성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음.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3호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산림조합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및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그동안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 있었음. 2월초 정도에 신용정보 일제 삭제 캠페인을 해서 신용정보는 보존기간이 10년이고 10년이 넘었는데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2월에 10년이 넘는 것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해서 앞으로는 금융위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음.

○ (보고자) 금감원과 함께 계도를 하도록 하겠음.

- (위원) 일제 공문을 보내든지 캠페인을 벌여서 삭제하는 것이 맞으니까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19.10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를 신설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전문투자자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자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TV 등 투자광고가 확대될 경우에 일반투자자 대상의 불법거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장치, 최소한도 공시의무 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 사모발행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제재근거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림.
- (보고자) 증선위 사전간담회와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때 유사한 우려사항들이 지적되었음. 참고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도입과 소액공모 가능 금액 상향하는 제도 자체가 저

회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2012년도에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하 잡스법)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 EU에서 2017년도에 마찬가지로 제도를 개편했음. 국내도 글로벌 시장에 부합한다는 차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도입을 했음. 미국에서도 2012년도에 도입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있었음. 기업의 자금조달을 우선시 할 것이냐, 투자자보호 문제를 우선시 할 것이냐는 논쟁이 미국에서도 있었음. 이것이 국회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제시가 될 텐데 법제처 법안심사 과정도 있고,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넣어놓았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위임할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없는지는 금감원과 여러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더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음.

- (위원) 아까 잡스법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개정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법제처 심의하거나 국무회의 갈 때 우리를 그대로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음. 은행 등 금융회사만 들어가면 상관없겠지만 사모펀드로 고생했기 때문임. 그런데

여기 보면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라고 하는데 손실감내능력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과장님은 손실감내능력을 시행령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 같았는데 강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금감원과 하겠음.

○ (위원)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6월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 확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로유지요건 변경, 클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상향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6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공동 최대주주가 되고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내용

○ (위원) △△△이 변경 후에 지분율이 1.7%인데 어떻게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지?

○ (보고자) 지분율로는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최대주
주와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면 공동최대주주로 보
도록 되어 있음.

○ (위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호 『표준검사처리기간 경과 검사건 등 보고』를 상정
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착수한 검사 중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건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처리계획 등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33분 폐회)